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제 회)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김영호 (통일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통일부장관이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활성화하고 남북 이산가족의 생애기록을 보존하기 위하여 영상편지 등을 제작·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84호, 2024.2.6. 공포, 2024.8.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산가족 고령화에 따라 현 시행령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영상편지 제작의 신청 절차와 영상편지의 보관·유지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의3 신설)
- 나. 생애기록물의 종류를 정하고, 생애기록물의 수집·동의 및 보관·유지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의4 신설)
- 다. 남북 이산가족의 현황 및 교류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그 주기에 관한 단서 추가(안 제2조제1항 수정)
- 라.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에 유전자검사 내용과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수집 내용 추가(안 제3조제1항 수정)

- 마. 대리인의 이산가족 찾기 취소 신청 조항을 삭제하고, 대리인의 이산가족 찾기 신청 및 취소 신청과 영상편지 제작 신청을 통합하여 별도 조항 신설(안 제4조제2항 수정, 안 제4조제3항 삭제, 안 제10조 신설)
- 바. 유전자검사 동의자가 유전자검사 자료의 폐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 규정(안 제4조의2제3항 수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5년”을 “3년”으로 하고, “다만 통일부장관이 남북 이산가족의 현황 및 교류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추가

제3조제1항에 제4호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와 제5호는 각각 제6호와 제7호로 한다.

4.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유전자검사 내용

5.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수집 내용
제4조제2항의 “이산가족 찾기 신청을 한 사람(이하 “이산가족찾기신청인”이라 한다)”을 “이산가족 찾기 신청을 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2제3항의 “유전자검사에 동의한 사람(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이 폐기를 요청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유전자검사에 동의한 사람(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이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라 폐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영상편지의 제작·신청 등) ①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영상편지(이하 “영상편지”라 한다)의 제작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4서식의 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영상편지를 신청자별로 분류하여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편지의 제작·신청 및 보관·유지·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생애기록물의 수집·동의 등) ① 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수집할 수 있는 이산가족의 생애기록물(이하 “생애기록물”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문서
2. 사진
3. 시청각물
4. 도서·간행물
5. 박물
6.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통일부장관은 생애기록물을 개인별로 분류하여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디지털 자료로 변환하여 관

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애기록물의 수집·동의 및 보관·유지·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대리신청) 대리인이 제4조제1항·제2항,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인 본인의 위임장이나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별지 제2호의4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5년마다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 ----- ----- ----- ----- 3년 ----- ----- --. <u>다만 통일부장관이 남북 이산가족의 현황 및 교류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u>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조(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의 구축)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이하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의 구축) ①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u>유전자검사 내용</u>
<신설>	5.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u>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u>

	작·수집 내용
4. (생략)	6. (현행과 같음)
5. (생략)	7.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이산가족 찾기 신청 등) ① (생략)	제4조(이산가족 찾기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u>이산가족 찾기 신청을 한 사람(이하 “이산가족 찾기신청인”이라 한다)이 그 신청을 취소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남북 이산가족 찾기 취소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② ----- <u>이산가족 찾기 신청을 한 사람</u> ----- ----- ----- ----- -----.
③ 이산가족찾기신청인 외의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이산가족 찾기 취소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남북 이산가족 찾기 취소 신청서에 이산가족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위임장을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제4조의2(유전자검사의 서면동의 등) ① ~ ② (생략)	제4조의2(유전자검사의 서면동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개설한 인체유래물은	③ ----- -----

행에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유전자검사에 동의한 사람(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이 폐기를 요청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보 관하여야 한다. 다만, 유전자검사에 동의한 사람(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이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라 폐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 ① 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수집할 수 있는 이산가족의 생애기록물(이하 “생애기록물”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④ ~ ⑤ (생 략) <신 설>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의3(영상편지의 제작·신청 등) ①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영상편지(이하 “영상편지”라 한다)의 제작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4서식의 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영상편지를 신청자별로 분류하여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편지의 제작·신청 및 보관·유지·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신 설>	1. 문서 2. 사진 3. 시청각물 4. 도서·간행물 5. 박물관 6.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통일부장관은 생애기록물을 개인별로 분류하여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디지털 자료로 변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애기록물의 수집·동의 및 보관·유지·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4조의4(생애기록물의 수집·동의			제10조(대리신청) 대리인이 제4조 제1항·제2항,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인

	본인의 위임장이나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남북 이산가족 찾기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등록)기간 14일	
성명	(한자)	별명 또는 아명(兒名)		사진 (3.5 × 4.5 cm) ※여권용 또는 반명함	
주민등록번호		실제 출생일			
출신지 (고향)		본관			
현주소	(우편번호 -)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번호			
	직장	이메일			
신청인의 주요 특징 ※ 헤어질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혈액형	
신청인의 아버지	성명	신청인의 어머니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존 여부		생존 여부		

남한의 가족사항
 (성명·성별·신청인과의 관계 및 연락처는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일련 번호	성명	성별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생존 여부
1						
2						
3						
4						
5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찾으려는 북한에 있는 가족 (1명 이상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일련 번호	성명	성별	신청인과의 관계	생년월일	헤어질 당시의 직업/ 학교명	헤어질 당시의 주소
1						
2						
3						
4						
5						
헤어진 시기		[] 6·25 이전 [] 6·25 당시 [] 휴전 이후~1959년 [] 1960년대 [] 1970년대 [] 1980년대 [] 1990년대 [] 2000년대 [] 2010년대 [] 2020년대				
이산사유 구분		[] 실향민 [] 국군포로 [] 납북자 [] 월북자 [] 북한이탈주민 [] 기타				
그 밖에 북한에 있는 가족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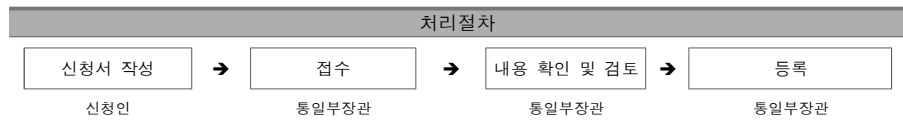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이산가족 찾기를 신청하고, 위 내용을 남북 당국 간 이산가족 교류에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남북 이산가족 찾기 취소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취소 사유 (중복 선택 가능)	[] 남한에 있는 부모님 및 형제자매 등의 사망
	[] 본인의 고령·건강 등 이유
	[] 가족 찾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 북한에 있는 가족의 사망(또는 사망 추정)
	[] 북한에 있는 가족의 불이익 우려
	[] 기타 사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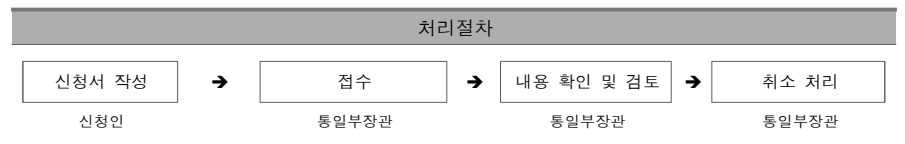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이산가족 찾기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사 자료 폐기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관리번호		
신청인 (검사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주소	
법정대리인 (대리하는 경우만 작성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폐기 신청 사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유전자검사 자료의 폐기를 신청합니다.

신청인(검사대상자) 년 월 일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검사대상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1. 이 신청에 따라 유전자 검사 자료를 폐기한 이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복구되지 않습니다.
2. 해당 유전자 검사 자료를 다시 등록하려면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유전자 검사를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영상편지를 받는 북한의 가족
(1명 이상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일련 번호	성명	성별	신청인과의 관계	생년월일	헤어질 당시의 직업/ 학교명	헤어질 당시의 주소
1						
2						
3						
4						
5						

제작된 영상편지의 활용에 대한 동의 여부 (동의를 거부하여도 영상편지 제작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통일부 홈페이지 게시 및 이산가족 관련 행사 상영	동의 []	미동의 []
	통일부가 승인한 공공기관 및 언론·방송 기관의 자료 활용	동의 []	미동의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영상편지 제작을 신청하고, 제작된 영상편지는 북한의 이산가족에게 전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남북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금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	-----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현주소	
	출생지	

북한의 가족	성명	나이	성별	현 거주지	신청인과의 관계	생사 여부

교류종류	[] 생사확인 [] 상 봉 [] 교류 지속(서신 교환 등)				
교류일 및 교류장소					
교류방법					
최초 생사확인 시기		교류 지속기간			
북한주민 접촉신고 수리일					
그 밖의 사항 (해당하는 사람만 표시합니다)	[] 국군포로의 가족 [] 남북자의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류 중개인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비고		

소요경비	총 소요경비		주선사례비		가족 지원액	
	물품지원		여비·숙박비		기타(통신비 등)	
수령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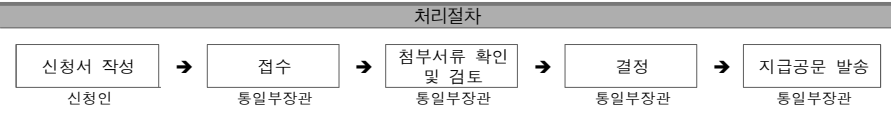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남북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위 기재사항은 사실이며, 기재사항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지원금의 반환 등 허위사실 기재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첨부서류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른 북한주민접촉결과 보고서 1부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북한의 가족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편지, 편지봉투, 사진, 여권 사본, 동영상 및 녹음테이프 등 북한의 가족과의 교류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안내사항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민간교류경비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류활동이 이루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북한의 가족에 대한 최초의 생사확인 2. 북한이나 제3국에서의 북한의 가족과의 상봉 3. 제1호에 따른 생사확인 또는 제2호에 따른 상봉 후 서신 교환 등의 교류활동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의안 소관 부서명 >

통일부 이산가족과	
연 락 처	(02) 2100 - 5911